

## 품 목 별 해 결 기 준

### 이사화물취급사업(1개 업종)

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(1 - 2)					
분	쟁	유	형	해 결 기 준	비 고
1)	이사화물의	멸실·파손·훼손	등 피해	○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	* 적용범위 :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상이사화물을 취급 하는 사업에 적용함.  *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%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함.
2)	사업자의	귀책사유로 인한	운송계약의 해제		
	-	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	통보 시	○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	* 운임 등 수취 원칙  · 운임 등의 수수료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	-	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	통보 시	○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	·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 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 가 발생하는 경우
	-	약정된 운송일의 당일	에 통보 시	○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	
	-	약정된 당일	에 통보가 없는 경우	○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	

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(2 - 2)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<p>3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</li> <li>-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</li> </ul>	<p>○ 계약금 배상</p> <p>○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</p>	<p>*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: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.</p>
<p>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</li> </ul>	<p>○ 계약해제,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</p>	
<p>5)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</p>	<p>○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</p>	
<p>6)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</li> <li>-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</li> </ul>	<p>○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(지체 시간수×계약금×1/2) 지급</p> <p>○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 배상</p>	<p>*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,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.</p>